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

의 평 구

결산검사 의견서

서울시 은평구청장 귀하

2019년 4월 22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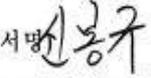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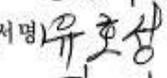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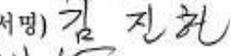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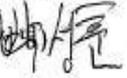
우리 위원들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에 따라 은평구 의회로부터 은평구 2018회계 연도의 세입·세출결산서 및 첨부서류에 대해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받아 2019년 3월28일부터 2019년 4월22일까지(26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우리의 결산검사는 2018회계연도 은평구의 세입·세출결산서 및 첨부서류가 지방회계법 등 관계법령과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세부지침 및 지방자치단체 결산지침의 준수여부를 검사하고, 은평구 재정규모의 적정성과 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여부에 대한 재무관련 회계검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들은 검사를 실시함에 있어 세입·세출결산서 및 첨부서류가 적정한지 여부에 대하여 회계별 세입·세출결산서와 장부 및 증거서류, 금고의 출납 등 3자가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일부 세부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출서류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우리 위원들의 의견으로는 은평구가 작성하여 제출한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및 첨부서류를 검사한 결과, 첨부한 개선 및 권고사항을 제외하고는 세입·세출결산 (계속비, 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 포함), 기금, 채권 및 채무의 결산, 성과보고서, 공유 재산, 물품과 금고의 결산 내용을 지방재정법 등 관련 제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은평구 결산 검사 위원

대표위원 신봉규 (서명) 
검사위원 유호성 (서명) 
검사위원 김진현 (서명) 
검사위원 박성훈 (서명) 

【 목 차 】

I . 결산검사 총괄 현황

1. 세입·세출 결산	2
2. 기금의 결산	9
3. 재무제표의 결산	10
4. 성과보고서	12
5. 결산서 첨부서류의 결산	14

II . 분야별 개선 및 권고사항

1. 세입결산 분야	18
2. 세출결산 분야	21
3. 기금결산 분야	30
4. 재무결산 분야	33
5. 성과보고서 분야	34

III . 총 평

IV . 전년도 지적(권고)사항 조치 내용

..... 41

I . 결산검사 총괄 현황

I. 결산검사 총괄 현황

1. 세입·세출 결산

(1) 총괄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검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세입·세출결산 총괄

(단위 : 천원)

회 계 별	예산현액	세입결산액(A)	세출결산액(B)	결산상 잉여금 (C=A-B)
합 계	803,632,731	839,319,217	673,609,058	165,710,159
일 반 회 계	783,491,782	818,535,947	666,176,753	152,359,194
특 별 회 계	20,140,949	20,783,270	7,432,305	13,350,965

(단위 : 천원)

회 계 별	결산상 잉여금	이 월 액				
		명시	사고	계속비	보조금 반납금	순세계 잉여금
합 계	165,710,159	27,823,641	26,520,459	12,348,114	13,394,121	85,623,824
일 반 회 계	152,359,194	27,823,641	25,599,459	12,348,114	13,361,610	73,226,369
특 별 회 계	13,350,965	0	921,000	0	32,510	12,397,455

본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은 839,319,217천원으로 예산현액 803,632,731천원보다 35,686,486천원이 더 수납 되었으며, 세출결산은 세입결산액의 80.3%인 673,609,058천원으로 결산상잉여금은 165,710,159천원임.

이 중 명시이월비 27,823,641천원, 사고이월비 26,520,459천원 및 계속비 12,348,114천원과 보조금 반납금 13,394,121천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85,623,824천원이며, 명시이월, 사고이월 및 계속비 이월액에 대하여 그 내용을 모두 확인한 바 적정하게 처리되었음.

(2) 일반회계

가. 세입

일반회계 세입결산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결 산 액	783,491,782	844,936,569	818,535,947	1,121,360	25,279,262
결산확인액	783,491,782	844,936,569	818,535,947	1,121,360	25,279,262
차 액	0	0	0	0	0

○ 세입결산 개요

수납액 818,535,947천원은 예산현액의 104.5%로써 35,044,165천원이 초과 수납 되었으며, 이는 주로 공동재산세와 세외수입의 증가에 기인함.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의 비율은 96.9%이며 불납결손액은 1,121,360천원 으로 주로 시효소멸이며, 미수납액은 25,279,262천원으로 대부분 납세태만 으로 인한 것임.

일반회계 세입결산 금고출납계산서와 대사

(단위 : 천원)

수 납 액	금고 출납계산서 금액	차 액
818,535,947	818,535,947	0

본 회계연도 세입의 장부와 증빙서에 의한 결산확인액과 결산액은 일치함.

연도별 세입현황 분석

(단위 : 천원, %)

연도별	예산현액	징수 결정액	수납액	불납 결손액	예산대비 징수 결정액	징수결정 대비 수납액	징수결정 대비 불납결손액
2018년	783,491,782	844,936,569	818,535,947	1,121,360	107.8	96.9	0.13
2017년	708,287,192	753,980,512	728,286,106	1,571,828	106.4	96.5	0.2
증 감	75,204,590	90,956,057	90,249,841	△ 450,468	1.4	0.4	△0.07

2017회계연도에 비해 예산대비 징수결정액이 소폭 증가하였으며, 징수활동의 강화로 전년도 수납액 728,286,106천원 보다 90,249,841천원이 많은 818,535,947천원이 수납됨.

불납결손액은 전년도 1,571,828천원 보다 450,468천원이 감소된 1,121,360천원으로, 시효소멸이 1,040,588천원, 무재산 53,107천원, 평가액 부족으로 인한 결손이 22,653천원, 체납처분 중지, 행방불명으로 인한 결손 등이 5,012천원임.

세목별 세입 결산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합 계		783,491,782	844,936,569	818,535,947	1,121,360	25,279,262
지방세	지방세	75,297,245	78,987,125	78,013,969	110,051	863,105
세 외 수 입	소 계	40,339,095	72,561,305	47,133,839	1,011,309	24,416,157
	경 상 적 세외수입	28,841,356	34,494,220	34,352,305	0	141,915
	임 시 적 세외수입	11,497,739	38,067,084	12,781,534	1,011,309	24,274,242
지방교부세		12,699,446	14,354,548	14,354,548	0	0
조정교부금 등		162,800,585	186,678,192	186,678,192	0	0
보조금		357,360,166	357,360,152	357,360,152	0	0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134,995,245	134,995,247	134,995,247	0	0

세목별 세입 내용을 보면 지방세는 전체 세수의 9.53%인 78,013,969천원이 수납되었고, 세외수입은 47,133,839천원, 지방교부세는 1.75%인 14,354,548천원, 조정교부금 등은 186,678,192천원, 보조금은 357,360,152천원이 수납됨.

나. 세출

일반회계 세출결산 확인

(단위: 천원)

구 분	예산액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잔액
결 산 액	727,910,121	783,491,782	666,176,753	65,771,215	13,361,610	38,182,204
결산확인액	727,910,121	783,491,782	666,176,753	65,771,215	13,361,610	38,182,204
차 액	0	0	0	0	0	0

○ 세출결산 개요

예산액 727,910,121천원에서 전년도 이월액 55,581,661천원을 포함하여 예산현액은 783,491,782천원으로, 예산 이용·전용액은 예산현액의 0.17%인 1,376,034천원이며 이용의 주요내용은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에 따른 인건비이며, 전용은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인한 예산의 부족 등임. 이체는 예산현액의 0.16%인 1,295,374천원으로써 2018. 3. 23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이관에 의한 것임.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85%에 해당하는 666,176,753천원이며 이월액은 65,771,215천원으로 그 주요내용은 예산교부 지연에 따른 사업 연기 등임.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4.87%에 해당되는 38,182,204천원으로 주요사유는 예산집행 잔액과 보조금 정산 잔액 등에 기인함.

일반회계 세출결산 금고출납계산서와 대사

(단위 : 천원)

지 출 액	금고 출납계산서 금액	차 액
666,176,753	666,176,753	0

세출결산서의 수납액은 금고 출납계산서의 금액과 일치함.

일반회계 기능별 집행현황

(단위 : 천원, %)

구 분	2017회계 연도지출액	2018회계연도			전년대비 증감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률	금 액	비율
합 계	593,290,859	783,491,782	666,176,753	85.1	72,885,894	112.3
일반공공행정	30,974,286	48,671,855	44,457,481	91.3	13,483,195	143.5
공공질서 및안전	1,624,802	3,286,270	1,921,794	58.5	296,992	118.3
교육	8,042,637	13,207,024	11,836,730	89.7	3,794,093	147.2
문화및관광	28,214,125	35,330,828	27,226,450	77.1	-987,675	96.5
환경보호	33,017,997	48,654,331	35,109,355	72.2	2,091,358	106.3
사회복지	345,372,897	438,667,724	393,545,398	89.8	48,172,501	113.9
보건	17,777,274	20,936,226	18,378,261	87.8	600,987	103.4
농림해양수산	1,504,658	1,837,944	1,382,303	75.2	-122,355	91.9
산업·중소기업	1,887,657	2,390,521	2,112,597	88.4	224,940	111.9
수송및교통	7,651,397	16,970,584	9,339,183	55.1	1,687,786	122.1
국토및지역개발	6,519,604	13,179,304	7,174,142	54.5	654,538	110
예비비	-	21,549,813	-	-	-	-
기 타	110,703,525	118,809,359	113,693,057	95.7	2,989,532	102.7

본 회계연도의 기능별 지출액은 사회복지 393,545,398천원, 기타 113,693,057천원 등의 순이며 전년대비 가장 많은 금액이 증가된 것은 사회복지 48,172,501천원이며 가장 증가 폭이 큰 부문은 교육으로 전년대비 147.2%가 증가함.

(3) 특별회계

가. 세입

특별회계 세입결산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 납 결손액	미수납액
합 계		20,140,949	34,379,485	20,783,270	22,998	13,573,218
특별 회 계	의료급여기금	916,146	1,341,893	986,233	0	355,660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1,599,332	1,638,392	1,638,392	0	0
	주차장특별회계	17,382,632	31,134,579	17,904,056	22,998	13,207,525
	자하수관리특별회계	242,839	264,621	254,589	0	10,033
결산확인액		20,140,949	34,379,485	20,783,270	22,998	13,573,218
차 액		0	0	0	0	0

○ 세입결산 개요

수납액 20,783,270천원은 예산현액의 103.2%로써 642,321천원이 초과수납되었으며 이는 주로 과태료 등의 세외수입 증가에 기인함.

○ 결손처분

불납결손액은 22,998천원으로 주로 시효소멸에 따른 결손처분임.

특별회계 세입결산 금고출납계산서와 대사

(단위: 천원)

수 납 액	금고 출납계산서 금액	차 액
20,783,270	20,783,270	0

각 특별회계의 세입결산서의 수납액은 금고 출납계산서의 금액과 일치함.

나. 세출

특별회계 세출결산 확인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잔액	
합 계	20,140,949	20,140,949	7,432,305	921,000	32,510	11,755,134	
특별회계	의료급여기금	916,146	916,146	885,697	0	30,447	2
	주민소득지원 및생활안정기금	1,599,332	1,599,332	61,600	0	0	1,537,732
	주차장	17,382,632	17,382,632	6,443,706	921,000	2,063	10,015,864
	지하수관리	242,839	242,839	41,302	0	0	201,537
결산확인액	20,140,949	20,140,949	7,432,305	921,000	32,510	11,755,134	
차 액	0	0	0	0	0	0	

○ 세출결산 개요

예산액은 20,140,949천원이며, 예산현액은 예산액과 동일함.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36.9%에 해당하는 7,432,305천원이며 이월액은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주차장 건립을 위한 부지매입 계약금으로 이월 금액은 921,000천원임.

특별회계 세출결산 금고출납계산서와 대사

(단위 : 천원)

지 출 액	금고 출납계산서 금액	차 액
7,432,305	7,432,305	0

세출결산서의 수납액은 금고 출납계산서의 금액과 일치함.

2. 기금의 결산

2018회계연도 기금의 결산은 다음과 같다.

(단위 : 천원)

기금명	전년도말 조성액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조성액
		계	조성액	사용액	
계	27,319,914	476,584	6,736,927	6,260,343	27,796,498
통합관리기금	8,634,727	△563,545	166,015	729,560	8,071,182
재난관리기금	2,413,171	△40,908	1,775,202	1,816,110	2,372,263
양성평등기금	909,006	1,143	14,430	13,286	910,150
자활기금	1,503,650	182,146	214,685	32,539	1,685,796
장애인등의편의 시설설치촉진기금	1,109,821	136,159	166,660	30,501	1,245,980
노인복지기금	790,592	2,160	12,580	10,420	792,752
중소기업육성기금	1,767,533	790,110	2,780,110	1,990,000	2,557,643
사회적경제활성화기금	3,275,327	326,790	429,992	103,201	3,602,117
옥외광고정비기금	1,210,803	△51,587	323,425	375,012	1,159,216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 대여기금	792,921	61,938	86,183	24,245	854,859
재활용품판매 대금관리기금	2,524,839	△97,916	51,130	149,046	2,426,923
도로굴착복구기금	1,674,380	△217,648	633,238	850,886	1,456,732
식품진흥기금	713,144	△52,259	83,277	135,537	660,885

2018회계연도 말 현재 기금 조성액은 전년도말 조성액 27,319,914천원에 당해연도 조성액 6,736,927천원을 더하고 사용액 6,260,343천원을 공제한 27,796,498천원으로 전년대비 476,584천원 증가하였음.

3. 재무제표의 결산

2018회계연도 구의 재정상태와 운영결과는 다음과 같다.

재정상태 및 증감 현황

(단위: 천원, %)

구분	2018	2017	전년 대비 증감(-)	
			금액	비율
자산	1,713,394,436	1,618,121,994	95,272,442	5.89
I. 유동자산	227,321,273	195,998,068	31,323,205	15.98
II. 투자자산	14,690,943	14,729,372	(38,429)	-0.26
III. 일반유형자산	256,317,261	185,993,161	70,324,100	37.81
IV. 주민편의시설	335,448,918	315,594,823	19,854,095	6.29
V. 사회기반시설	871,297,971	897,695,356	(26,397,385)	-2.94
VI. 기타비유동자산	8,318,068	8,111,214	206,854	2.55
부채	33,386,064	26,714,156	6,671,908	24.98
I. 유동부채	16,476,599	12,286,785	4,189,814	34.10
II. 장기차입부채	-	-	-	-
III. 기타비유동부채	16,909,465	14,427,371	2,482,094	17.20
순자산	1,680,008,372	1,591,407,838	88,600,534	5.57
I. 고정순자산	1,461,809,070	1,389,220,231	72,588,839	5.23
II. 특정순자산	32,562,217	32,616,604	(54,387)	-0.17
III. 일반순자산	185,637,085	169,571,003	16,066,082	9.47

2018회계연도 은평구의 자산은 1조 7,133억원으로 전년도의 1조 6,181억원 보다 952억원(5.89%) 증가하였는데, 이는 토지와 입목 및 건물이 포함된 일반유형자산이 703억원(37.81%) 증가하였기 때문이며,

2018회계연도 은평구의 부채는 333억원으로 전년도의 267억원 보다 66억원 (24.9%) 증가하였는데, 주요 요인으로는 보조금 집행잔액과 세입세출의 현금에 보관된 장기예수 보증금이 작년대비 늘어남에 따라 각각 유동부채가 41억(34.1%), 비유동부채가 24억(17.2%) 증가하였기 때문임.

통합 재정운영 및 증감 현황

(단위: 천원, %)

구 분	2018	2017	전년 대비 증감(-)	
			금 액	비 율(%)
I. 사업순원가 (가 - 나)	149,981,198	134,338,032	15,643,166	11.64
가. 사업총원가	505,367,424	454,076,801	51,290,623	11.29
나. 사업수익	355,386,226	319,738,769	35,647,457	11.14
II. 관리운영비	124,585,957	112,603,113	11,982,844	10.64
III. 비배분비용	6,229,075	7,351,285	-1,122,210	-18.01
IV. 비배분수익	12,698,653	12,433,472	265,181	2.13
V. 재정운영순원가 (I + II + III - IV)	268,097,577	241,858,958	26,238,619	10.84
VI. 일반수익	317,223,441	297,218,281	20,005,160	6.73
VII. 재정운영결과 (V - VI)	(49,125,864)	(55,359,323)	6,233,459	8.74

은평구의 본 회계연도 중 발생한 사업순원가는 사업총원가 5,053억원에서 사업수행과정에서 발생한 수익 3,553억원을 차감한 1,500억원이며, 총 72개의 정책사업 중 순원가가 많은 상위 정책사업은 ‘어르신 복지 증진’ 205억원과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 이 146억원임.

또한, 2018회계연도 중에 발생한 관리운영비는 인건비 1,226억원과 기타관리운영비 19억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비배분비용은 감가상각비 49억원, 자산처분손실 11억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비배분수익은 경상세외수익 32억원, 임시세외수익 78억원, 기타수익 17억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2018회계연도 은평구의 재정운영결과(비용-수익)는 491억원으로 전년도의 554억원 보다 62억원(8.74%) 증가하였으며, 주요 요인은 지방세수익 및 정부 간 이전수익 증가로 인한 것임.

4. 성과보고서

은평구는 「지방재정법」 제5조제2항 및 제44조의2제1항, 「지방회계법」 제15조 및 제16조의제4항,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용에 관한 규칙」 제2조의2에 따라 2018회계연도의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를 작성함.

은평구는 본 회계연도의 ‘북한산 큰 숲, 사람의 마을 은평’이라는 희망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에 ‘비전-전략목표(10개)-정책사업목표(72개)-단위사업(188개)’로 구성된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성과목표의 성과 달성 여부를 측정하기 위하여 총 72개의 정책사업 목표와 161개의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성과지표마다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치를 설정함.

성과지표 달성현황

(단위 : 개, %)

구 분	전 략 목표수	정책사업 목표		성과지표 목표달성 여부		
		개수	지표수(A)	초과달성, 달성 수(B)	미달성 수	달성률 (B/A)
계	10	72	161	126	35	78
감사담당관	1	1	2	2	0	100
홍보담당관	1	1	3	3	0	100
행정안전국	1	12	32	20	12	63
협치문화국	1	13	19	15	4	79
주민복지국	1	9	22	15	7	68
재정경제국	1	9	13	12	1	92
도시환경국	1	9	27	20	7	74
건설교통국	1	10	24	22	2	92
보 건 소	1	7	17	15	2	88
구의회사무국	1	1	2	2	0	100

은평구의 성과지표 달성 현황을 살펴보면, 161개의 성과지표 중 126개의 지표는 100% 및 그 이상을 달성한 반면 35개의 지표는 성과목표에 미치지 못하였음.

성과보고서의 작성 지침에 따르면 당초 성과계획서와 일치되도록 작성하고, 성과보고의 객관성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한 목표달성의 구체적 근거를 제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충실한 성과분석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5. 결산서 첨부서류의 결산

(1) 채권

채권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전년도말 현재액	당해연도 발생액	당해연도 소멸액	당해연도말 현재액
합 계	15,167,551	5,827,209	5,658,888	15,335,873
일반회계	7,485,956	813,218	7,834	8,291,340
특별회계	432,040	136,911	154,604	414,347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5,040	0	0	5,040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427,000	136,911	154,604	409,307
기 금	7,249,555	4,877,080	5,496,450	6,630,186
사회적경제 활성화기금	0	205,857	49,579	156,278
중소기업육성기금	6,912,440	4,645,823	5,363,033	6,195,230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대여기금	337,115	25,400	83,838	278,678

검사결과 채권의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15,335,873천원으로 확인됨.

(2) 채무 : 해당사항 없음

(3) 공유재산

2018회계연도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결산은 다음과 같다.

공유재산 증감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전년도말 현재액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현재액
			증	감	
합 계		1,135,544,758	325,321,194	64,103,642	1,396,762,310
행정 재산	공용재산	346,307,582	28,971,177	9,189,272	366,089,487
	공공용재산	770,376,999	293,931,078	50,838,372	1,013,469,705
	기업용재산	0	0	0	0
	보존재산	0	0	0	0
	소 계	1,116,684,581	322,902,255	60,027,645	1,379,559,192
일반재산		18,860,177	2,418,939	4,075,998	17,203,118

검사결과, 결산액은 전년도 보다 261,217,552천원이 증가한 1,396,762,310천원으로 주요 증가 내역은 구립 사랑가득 어린이집 매입, 구립 응암어린이집 기부채납, 은평뉴타운 정비사업 완료로 인한 도시기반시설 무상귀속 등이며, 감소내용은 응암제1구역재개발사업, 수색9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사업구역 내 용지매각 등임.

(4) 물품

물품증감 및 현재액의 결산은 다음과 같다.

물품 증감현황

(단위 : 개, 천원)

구 분	전년도말 현재액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현재액
		취 득	처 분	
수 량	1,002	168	98	1,072
금 액	8,865,765	1,164,517	415,655	9,614,627

2018년도말 현재액은 9,614,627천원으로

당해연도 증감내역은 신규취득 등으로 1,164,517천원이 증가한 반면, 매각 또는 양여 등으로 415,655천원이 감소하여 전년도에 비해 748,862천원이 증가한 것으로 확인됨.

증가사유는 구립어린이집 및 노인복지시설 확충 및 리모델링에 따른 물품 매입과 노후장비 교체에 따른 증가이며, 주요 구매내역으로는 냉난방기·냉방기 21대, 노트북 컴퓨터 23대, 디지털비디오 레코더 22대, 비디오 프로젝터 14대 등의 신규취득으로 발생되었음.

II. 분야별 개선 및 권고사항

II. 분야별 개선 및 권고사항

1. 세입결산 분야

(1) 시효소멸에 의한 결손처분 징수관리 철저

【현황 및 문제점】

시효소멸에 의한 결손처분 현황

(단위:원)

구분	세입과목		건수	결손금액	관련부서
	항	목			
시효 소멸	기타수입	그외수입 (부가가치세 환수금)	1	11,299,660	자원순환과
	과징금 및 과태료 등	이행강제금	2	45,501,110	건축과
		합 계	3	56,800,770	

세외수입 중 자원순환과에서 2013년 부과한 폐합성폐기물용역 부가가치세 환수금과 2010, 2011년 건축과에서 부과한 건축이행강제금의 경우, 최초 부과금액이 건당 10,000천원 이상으로 고액이었으나 적극적인 채권 확보 조치를 취하지 않아 2018년 시효소멸로 결손처분 되었음.

시효소멸 예정(2019 ~ 2020년) 체납내역

(단위:원)

세 목 명	체납건수	체납금액	압류여부
개발제한구역이행강제금	22	292,343,660	미압류
건축이행강제금	45	797,490,610	
부동산거래신고의무위반과태료	3	53,347,800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과태료	1	4,063,800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법과징금	2	525,129,890	
합 계	73	1,672,375,760	

※ 최초 과세금액 2백만원 이상

또한, 부동산 관련 이행강제금 및 과태료 중 최초 과세금액 2백만원 이상의 고액 체납된 73건이 채권보전조치가 불가능하여 미압류 상태로 있으며, 2019년 이후 시효소멸 기산일이 경과하여 결손처분 될 예정임.

【개선 및 권고사항】

세입금을 부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체납 세입금에 대한 관리도 중요합니다. 지방세 징수법에 따라 5년이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징수의 권리를 행사하기 어렵습니다. 고액의 미수납건에 대하여는 체납 발생 즉시 채권보전 조치 등을 취하여 소멸시효로 인한 결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세입징수 방안을 모색하여 징수관리 할 것을 권고합니다.

(2) 세외수입 체납관리에 대한 제도적 보완 강구

1) 일반회계 세외수입 미수납액 징수방안 모색

【현황 및 문제점】

일반회계 세외수입 미수납액 현황(최근 5년간)

(단위:백만원)

세목명	미수납액	구성비	2018년	2017년	2016년	2015년	2014년	2013년 이전분
자동차의무보험과태료	8,532	39.21%	420	469	570	555	714	5,804
건축이행강제금	4,578	21.04%	1,708	288	97	175	240	2,070
자동차관리법(검사)위반	3,187	14.65%	159	128	126	127	197	2,450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	1,682	7.73%	424	380	0	0	320	558
자동차배출가스정밀검사	1,038	4.77%	0	0	0	0	0	1,038
개발제한구역이행강제금	883	4.06%	356	0	141	144	93	149
기타	1,860	8.55%	293	119	92	106	93	1,157
총 액	21,760	100%	3,360	1,384	1,026	1,107	1,657	13,226

2018년 말 기준 세외수입 미수납 현황을 살펴보면 자동차 관련 미수납액은 전체 미수납액의 58.63%에 해당하는 12,757백만원이며, 9,291백만원이 부과 후 5년을 경과하는 금액으로 회수 가능성이 매우 희박한 실정임.

부동산 관련 미수납액은 전체 미수납액의 32.83% 해당하는 7,143백만원이며, 이 중 5년 이내 부과한 금액이 4,366백만원으로 부과 건당 미수납액이 상대적으로 크고 회수 가능성이 높은 상태임.

【개선 및 권고사항】

세수 증대를 위하여 회수 가능성이 높은 건축이행강제금, 부동산권리자명의 등기 및 개발제한구역이행강제금 등 부동산 관련 미세외수입금에 대한 집중적인 회수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수납액에 대한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법적조치를 위하여 세무과, 주거재생과, 건축과, 교통행정과 등 관련부서에서는 징수 실무를 수행할 임시계약직 등의 인력을 구성하여 효과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를 위해 독촉안내문, SMS 문자발송 등을 통해 납부 독려하는 등 적극적인 체납 징수방안을 모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특별회계 및 기금 체납관리 부서 개선 검토

【현황 및 문제점】

회계별 세외수입 미수납액 징수현황

(단위:천원)

구분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주차장	의료급여	지하수관리	장애인편의 시설설치	옥외광고 정비
2017년말 미수납액	23,272,408	13,584,744	349,062	9,080	93,367	553,728
2018년 징수액	2,313,921	1,265,000	12,132	744	17,553	6,602
징수율	9.94%	9.31%	3.48%	8.19%	18.80%	1.19%

일반회계의 경우 당해연도 미수납액이 발생하면 다음연도에 세외수입 전담 부서 세무1과로 이관되어 관리되고 있으나, 특별회계와 기금의 경우에는 과세부서에서 체납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음.

2018년 세외수입 미수납액 징수현황을 보면 장애인편의시설설치기금을 제외한 특별회계와 기금의 경우 일반회계에 비해 전반적으로 미수납액 징수율이 저조하게 나타남.

부과부서 체납 담당의 경우 체납 이외의 다른 업무를 겸하고 있고, 잦은 인사이동, 경력 부족 등의 사유로 체납업무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함.

이로 인하여 체납 초기 부동산이나 예금 등의 채권보전조치가 적절히 이루어지지 못하여 장기체납, 결손처리 등으로 이어지고 있음.

【개선 및 권고사항】

체납 세입금 관리로, 특별회계와 기금 체납분에 대하여 일반회계와 동일하게 세외수입 전담부서로 이관하여 통합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며, 징수율을 제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부서들 간 업무협의를 통하여 특별회계와 기금 세외수입의 보다 효과적인 체납관리 부서 개선방안에 대하여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세출결산 분야

(1) 예산 이월액 증가

【현황 및 문제점】

예산현액 대비 이월액 현황

가) 일반회계

(단위:천원)

연도	예산액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불용액
2017년	670,393,219	708,287,192	593,290,859	55,581,661	59,414,672
2018년	727,910,121	783,491,782	666,176,753	65,771,215	51,543,814
증가율	9%	11%	12%	18%	-13%

나) 특별회계

(단위:천원)

연도	예산액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불용액
2017년	16,955,780	16,974,506	7,192,307	-	9,782,199
2018년	20,140,949	20,140,949	7,432,305	921,000	11,787,644
증가율	19%	19%	3%	-	21%

2018년 일반회계는, 2017년 대비하여 예산현액은 11%, 지출액은 12%가 증가한 반면, 이월액은 2017년 대비 18% 증가하였음. 즉, 2018년 은평구의

일반회계의 경우, 예산액 및 예산현액 증가율보다 이월액이 대폭 증가한 반면 불용액은 감소한 양상을 띠고 있음. 반면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증가율 대비 지출액 증가율이 낮으며 불용액은 대폭 증가하였음.

일반회계 분야별 이월현황

(단위:천원)

분야별	2017년	2018년	증감액
일반공공행정	2,638,381	1,261,064	-1,377,317
공공질서 및 안전	24,442	1,289,186	1,264,744
교육	193,400	1,010,308	816,908
환경보호	1,534,987	12,004,013	10,469,026
사회복지	36,097,107	30,329,243	-5,767,864
문화 및 관광	10,229,571	6,217,116	4,012,455
수송 및 교통	2,009,918	7,022,898	5,012,980
국토 및 지역개발	1,812,612	5,276,815	3,464,203
보건	118,506	774,574	656,068
농림해양수산	404,902	341,025	-63,877
산업·중소기업	517,836	155,373	-362,462
기타	0	89,600	89,600
합계	55,581,662	65,771,215	18,214,464

2018년 환경보호분야의 이월액이 대폭 증가한 사유는 광역자원순환센터 건립 사업의 계속비 이월액이 약 9,848,114천원이 발생하였기 때문이며, 특히, 사회복지 분야의 구립어린이집 및 노인복지시설 확충사업은 단위별 예산액이 크고 부지선정의 어려움과 부지 소유자의 매도의사 중도포기 및 각 사업당 예산확보의 어려움 등의 이유로 인하여 매년 반복적으로 대규모 이월액이 발생하고 있음.

수송 및 교통분야에서는 도로개설(백련산로, 대조동)과 노후 제설차량 교체에서 6,650,897천원의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이 발생하였으며,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서는 공원 및 공원 시설물 관리 부문에서 2,431,544천원의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이 발생하였고, 하수시설물 보수공사 사업에서 982,584천원 사고이월이 발생하였음.

특별회계에서는 주차장 시설비로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사고이월 금액 921,000천원이 이월되었음.

【개선 및 권고사항】

환경보호분야의 광역자원순환센터의 건립사업은 주민들 민원 발생으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 서북3구의 협력체제로(마포구-소각폐기물, 서대문구-음식물, 은평구-재활용) 센터구축이 시급한 당면 과제지만, 2013년 10월 광역재활용시설로 부지계획을 수립한 이후 여러가지 사유로 인해 추진이 원활치 못하였습니다. 여러 대규모 사업의 사례를 참고해 볼 때, 사업수행이 지연되어 장기화되면 소요예산이 증가하고 달성 가능성도 감소할 수 있습니다. 최근 심각한 환경문제를 고려하여 보면 본 사업의 중요성 및 시급성은 매우 높으며, 은평구만이 아니라 타 구(마포구, 서대문구)에서도 지대한 관심을 보이며 본 사업의 달성을 위해 막대한 예산지원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당 사업의 성패는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고, 치밀한 사업계획 수립 및 적시의 사업시행으로 인한 공사기간 단축과 사업의 효율성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이에 전문 인력의 조언, 타 구청 및 해외사례의 연구, 적극적인 구민 홍보 등으로 본 사업의 시행을 최대한 조속히 추진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사료됩니다.

또한, 어린이집 확충 및 노인 복지시설 확충사업은 전문적인 인력 동원과 사업의 통합 등으로 그 사업수행의 효율화를 도모하고, 사업 수행기간을 단축하여 이월 예산을 최대한 축소하고, 부지 소유주의 매도 의사 변경을 방지하기 위한 절차의 간소화 등 제도적 보완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2) 관내 인프라시설의 투자 증대

【현황 및 문제점】

최근 5년간 분야별 지출비율

(단위:%)

분 야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일반공공행정	5.3	4.8	5.5	4.9	6.4
공공질서 및 안전	0.3	0.3	0.3	0.3	0.4
교육	2.2	1.9	1.7	1.3	1.8
문화 및 관광	3.9	3.5	4.6	4.5	3.4
환경보호	4.0	4.3	5.1	5.0	6.6
사회복지	57.2	59.6	57.2	55.3	55.3
보건	3.2	3.2	3.4	3.0	2.9
농림해양수산	0.1	0.2	0.2	0.2	0.2
산업중소기업	0.5	0.2	0.7	0.3	0.3
수송 및 교통	0.9	1.0	1.1	1.4	2.0
국토 및 지역개발	0.8	0.8	0.9	1.2	1.6
예비비	0.6	0.5	1.2	5.7	3.0
기타	21.0	19.7	18.5	16.8	16.3
합 계	100	100	100	100	100

은평구는 복지예산의 비중이 전체 예산의 55%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서울시 25개 구청 중 2~3번째로 복지예산의 비중이 높음. 이러한 복지예산의 지출 규모는 관내 특성상 불가피한 현실이라 볼 수 있지만, 표에서 보는 것처럼 주민의 안전과 직결한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의 세출예산 비중은 복지관련 예산에 비해 현저하게 적음.

하수관로 경과연수 현황

(2019. 1월 기준)

구 분	계	20년 미만	20~30년	30~40년	40년 이상
연장(km)	455	175	88	26	166

하수시설물 유지관리 추진실적(최근 5년간)

(단위:백만원, km)

구 분	합 계	2018년	2017년	2016년	2015년	2014년
소요예산	7,460	3,240	1,320	1,090	1,085	725
정비연장	3.83	1.29	0.53	0.87	0.80	0.34

은평구의 하수 시설 현황을 살펴보면, 총 길이 455km 중 30년 이상 노후화된 시설이 42%에 달하여 매년 침수 피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임. 구청의 자체 계획을 살펴보면 향후 예상되는 하수시설 개보수에 대한 투자 규모가 미미하여 완전한 시설 개보수가 이루어지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됨.

【개선 및 권고사항】

2018년의 경우 침수피해로 인해 복구 지원예산만 1,318백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침수피해는 매년 발생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예산부서 및 관련 부서에는 구민의 안전과 재해 피해를 최소화하는 구민 안전 기반시설 구축과 균형예산 집행 등에 필요한 예산 비중을 증대하는 방향을 고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조직의 비탄력적 운영 및 과도한 기간제 근로자 채용

【현황 및 문제점】

현재 단발성 사업추진 시 기간제근로자 채용이 빈번하고 추가적인 인력 채용이 과도한 실정임. 이는 구청업무의 팽창과 복잡성의 증대로 인한 현상이라고 볼 수 있겠으나, 내부인력의 효율적인 운영을 배제한 기간제근로자 채용은 구 재정에 부담을 줄 수 있음.

최근 3개년 인건비 집행현황

(단위:백만원, %)

구 분	2016			2017			2018		
	예산 현액	비중	집행액	예산 현액	비중	집행액	예산 현액	비중	집행액
예산액	585,788		527,206	670,393		569,559	727,910		633,837
인건비 합계 (A+B)	110,546	18.9	104,971	118,813	17.7	115,932	128,042	17.6	122,091
기준인건비 (A)	103,654	17.7	98,384	108,945	16.3	106,667	116,123	16.0	110,640
기타인건비 (B)	6,892	1.2	6,587	9,868	1.5	9,265	11,919	1.6	11,451

최근 3년간 인건비 지출현황에서 볼 수 있듯이 정규직 인건비에 해당하는 기준 인건비의 비중은 점차 하락하고 있으나 기타 인건비에 해당하는 기간제 근로자등의 인건비의 비중은 소폭 증가하고 있음.

이는 고용증대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는 정부 정책에 부합하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으나, 단발성 사업추진 시 기간제 근로자 채용수요가 많은 것으로 보여지며, 아울러 최저 임금제의 시행으로 구청 재정에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음. 장기적인 관점에서 구청의 인력운영이 고착화되고 비탄력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검토를 바탕으로 유연하고 탄력적인 조직 운영을 추구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짐.

【개선 및 권고사항】

단순 반복적이고 기계적으로 예산 편성되는 사업을 최소화하기 위한 일몰제를 과감히 도입하여 사업 내용의 내실화를 기하기 바랍니다. 또한 철저한 인사 평가를 바탕으로 과감한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하여 내부인력을 적극 활용하며, 팀과 부서의 칸막이를 낮추는 과감한 조직통합으로 인력 활용의 시너지를 극대화하기 바라며, 수시로 사업수행 진척율을 반영한 철저한 조직 진단과 피드백을 통하여 효율적인 조직운영에 대해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 철저

【현황 및 문제점】

최근 3개년 보조금 집행잔액 미반납 현황

(단위: 원)

결산년도	당해연도 반납액	미반납액	미반납율	미반납사유
2016년	3,917,940,580	111,110,465	2.83%	추경 미반영 및 고지서 미수령 등
2017년	6,156,877,350	102,734,800	1.66%	"
2018년	9,446,168,927	377,222,233	3.99%	"

2018회계연도 보조금집행잔액 미반납 내역

(단위: 원)

부서	세부사업명	이월구분	재원	미반납액
행정지원과	인력운영비(기존 사회복지직 인건비)	당해	시비	64,510,000
시민교육과	혁신교육지구 추진	당해	시비	1,167,060
	마을과 함께하는 학교 운영	당해	시비	2,963,860
문화관광과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보조사업)	당해	국비	3,404,460
			시비	3,404,430
	전통사찰 보수 정비	당해	국비	4,510,000
	은평구 물빛마을여행(참여예산)	당해	시비	20,130,000
	韓문화 너나들이센터 건립 및 운영	사고이월	시비	20,817,410
	한옥전망대 건립사업	사고이월	시비	500,000
가족정책과	여성안심 행복마을 만들기	당해	시비	30,100
			시비	400,000
보육지원과	부모모니터링단 운영	당해	국비	2,363,000
			시비	1,181,500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당해	국비	65,035,500
			시비	106,223,850
	공동육아 활성화 지원	당해	시비	43,930
어린이집 기능보강	당해	시비	5,004,000	
자원순환과	주택 슬레이트 지붕재 교체	당해	국비	1,305,000
치수과	하수시설물 유지관리	당해	시비	424,000
공원녹지과	산림병해충방제(산림병해충방제사업)	당해	국비	3,978,230
			시비	826,390
	산림재해일자리장기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경상)	당해	국비	1,511,460
			시비	453,450
	산림재해일자리장기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자본)	당해	국비	39,090
			시비	11,810

	서울형 도시텃밭 조성	당해	시비	40,000
장애인복지과	장애인복지관 운영	사고이월	시비	49,201,000
도시계획과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및 변경	명시이월	시비	13,770,740

※ 이자반납 미요청으로 인한 미반납건 등 제외

2016, 2017회계연도 대비 2018회계연도 보조금 집행잔액 미반납율이 증가하였으며, 2017회계연도 보조금 정산 결과 발생한 집행잔액을 2018회계연도 내에 반납처리 하지 않은 미반납액 377,222,233원 발생하였음.

【개선 및 권고사항】

보조금 사업은 당해연도에 집행하고 발생한 집행잔액과 이자에 대한 정산 결과를 반납고지서에 의거하여 다음연도 추경예산에 반영 후 반납하는 것이 일반적인 과정입니다. 그러나, 2018회계연도의 경우, 문화관광과의 “은평구 물빛마을 여행(참여예산)” 등 10개 부서에서 보조금 집행잔액을 추경에 미반영하여 반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에 대한 원금과 이자를 2019회계연도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반납하여야 합니다.

반납고지서를 수령하지 못했거나 추경 누락으로 반납하지 못하였다고 하지만, 일반적인 과정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적은 금액이라도 우리구의 신뢰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추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조금 집행 업무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5) 예비비 지출제한 준수 필요

【현황 및 문제점】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단위 : 천원)

회계	세부사업	지출결정액	지출액	지출결정일자	지출일자	지출사유
일반	여성정책 업무추진	20,000	18,715	2018.07.09	2018.08.16	공원 내 은평 평화소녀상 설치에 따른 안전진단 비용 지원 등
특별	주차장 확대개방 및 관리	49,804	49,803	2018.04.11	2018.04.18	부당이득금 관련 배상금 지급 (거주자우선주차 구획 무단점유)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에서 은평 평화 소녀의상 건립으로 예비비 18,715,000원을 지출하였으며, 교통지도과의 법률 고문운영 및 송무활동 지원과 관련하여 주차장특별회계에서 49,803,400원의 예비비를 사용하였음. 민사소송 패소에 따른 배상금 지급 등 일반예비비 사용은 기획예산과에서 총괄로 관리하고 있으나, 특별회계 예비비는 특별회계 편성부서에서 집행 완료 후 예비비 총괄부서인 기획예산과에서 알 수 있는 사항임.

【개선 및 권고사항】

일반적으로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경비로 전체 구민의 직접적 사안과 구정 정책의 집행과정에 사용되어야 합니다. 은평 평화 소녀의상 건립사업처럼, 소녀상건립추진 위원회에서 예기치 못한 준비과정에서 발생한 사안에 대하여 예비비를 지출한 것은 적절치 못한 사안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손해배상금의 경우, 소송 종료시기 및 손해배상액 등을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예비비로 지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의 예비비 편성은 특별회계 설치 목적에 맞도록 사업예산 집행과정에 사용되어야 하고, 극히 제한된 범위 내에서 사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비비가 일부 의견으로 사용 되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마련이 필요하고, 예비비 사용 또한 불가피한 사정이 충분이 고려하여 사용되어야 합니다. 또한, 소송관련 손해 배상금의 경우에는 특별회계 예비비보다는 일반 예비비로 집행하여 예비비 총괄부서에서 항상 예비비 사용현황을 관리 파악하여 사용할 것을 권고합니다.

3. 기금결산 분야

(1) 일부 기금사업 존치 필요성 재검토

【현황 및 문제점】

(단위:천원)

기 금 명	전년도말 조성액(가)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조성액 (다)=(가)+(나)
		계(나)	조성액	사용액	
노인복지기금	790,591	2,161	12,580	10,419	792,752
양성평등기금	909,006	1,143	14,429	13,286	910,149

2018회계연도 운영한 통합관리기금 외 12개의 기금에 대해 검토해본 결과 전반적으로 기금설치 운용목적에 따라 적정하게 운용되고 있음. 다만, 노인복지기금과 양성평등기금의 경우 수입 및 지출의 규모가 작아 제한적인 금액으로 설치목적에 맞는 사업을 추진하기에 어려움이 있고, 지출처가 일반회계와 중복되거나 큰 차이가 없어 별도의 기금 운용에 따른 실효성이 부족해 보임.

【개선 및 권고사항】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상 기금의 설치·운영은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로 사업을 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 특정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자금입니다. 현재 운용 중인 13개 기금의 운용목적과 필요성에 대한 심도있는 분석으로 해당 사업이 기금으로 운용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기금 총괄부서와 관련부서에서는 기금 조성액의 규모를 실효성 있는 금액으로 재조정하거나, 관련 법령 등을 재검토하여 기금 조성을 폐지하고 일반회계로 통합 운영하는 등 기금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세입 예산과목 구분 관리

【현황 및 문제점】

일반회계의 세입결산서에는 지난년도 미수납액이 현년도 세입과목의 지난 연도 수입항목(225-01)으로 표기되어 있지만, 기금의 세입결산서에는 지난 연도 수입항목을 사용하고 있지 않음.

현재 이자수입외 과태료 및 과징금 등 세외수입항목이 있는 기금(장애인등의 편의시설 설치기금, 옥외광고정비기금)의 경우에는 지난연도 수입을 당해연도 징수결정액에 포함하여 나타내고 있음.

이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와는 다른 기준으로 작성되어 결산서의 비교 가능성과 이월 잔액이 별도로 표기되지 않아 결산서에 대한 이해도를 낮추고 있으며, 이월된 미수납액에 대한 관리가 미흡한 사례로 발견되었음.

【개선 및 권고사항】

기금 사업의 정확한 세입결산과 체계적인 미수납액 관리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 제5조에 제시된 세입예산 과목구분 기준에 따라 수입결산서 작성시 정확한 예산과목을 적용하여 구민들에게 보다 나은 정보를 제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일부기금 수입결산 미수납액 누락

【현황 및 문제점】

장애인등의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 수입결산

(단위:천원)

기금명	과목명	징수결정액	수납총액	환급액	실제수납액	미수납액
장애인편의 시설설치 촉진기금	과태료 (223-05)	147,423	147,503	80	147,423	0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재활용품수거 판매수입 (213-03)	9,059	9,059	0	9,059	0

장애인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의 과태료 수입항목 확인결과 미수납액을 포함한 징수결정액이 아닌 실제수납액 147,423천원을 징수결정액으로 기재하였으며, 미수납액 132,049천원이 누락되었음.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에서는, 2018년도 전체 징수결정액이 아닌 실제 수납액을 9,059천원을 징수결정액으로 기재하여 실제 미수납액 82,104천원이 누락됨.

【개선 및 권고사항】

징수결정액에는 당해연도분과 전년도 미납·체납분 징수액이 모두 포함되어야 하므로, 누락된 미수납액을 반영하여 수정하여 주시기 바라며, 결산서의 신뢰성 제고를 위하여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기금 미수납액 체납관리 철저

【현황 및 문제점】

옥외광고정비기금 미수납액 현황 (단위:건,천원)

세 목	총 미수납액		시효소멸 미수납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이행강제금	356	238,180	75	41,525
과 태 료	395	890,892	56	50,714
합 계	751	1,129,072	131	92,239

2011년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이후 과년도 미수납액에 대한 독촉 및 압류 등의 체납관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이로 인하여 총 미수납액 1,129,072천원 중 별다른 체납처분 없이 시효소멸되어 결손처리 예정인 미수납액이 총 92,239천원임.

【개선 및 권고사항】

해당부서에는 시효소멸된 미수납액에 대하여 즉시 결손처분 하여 주시기 바라며, 타 세외수입에 비해 건별 부과금액이 고액인 경우가 많으므로 소멸 시효 완성 전 부동산 및 예금압류 등 적극적인 채권보전조치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재무결산 분야

(1) 재정상태표의 자산과 부채 일부금액 계상 착오

1) 퇴직급여충당부채의 과소계상

【현황 및 문제점】

(단위:원)

구 분	당초금액	수정금액	차액
일반회계	10,834,020,120	13,241,197,012	2,407,176,892
의료급여특별	72,397,966	108,838,191	36,440,225
주차장특별회계	135,632,320	132,473,884	(3,158,436)
합 계	11,042,050,406	13,482,509,087	2,440,458,681

환경미화원의 경우 5년이상 근무시 군복무기간 중 3년 이내의 기간만을 가산하고, 10년이상 근무시 50% 가산 규정이 있으며, 환경미화원을 제외한 일용직의 경우에는 1년이상 근무시 군복무기간 3년 이내에서 가산하고 5년 이상 근무시 50% 가산 규정이 있어 퇴직급여충당부채에 대한 서로 다른 규정이 있음에도 퇴직급여충당부채 산출시 이를 적용하지 못한 사례가 발생함.

【개선 및 권고사항】

일용인부, 환경미화원 등에 대한 퇴직금지급대상에 대하여 퇴직급여지급 규정의 세부규정에 대한 세밀한 검토 후 검증절차를 수행하도록 권고함.

2) 소송사건 우발부채 과대계상 산출

【현황 및 문제점】

(단위:원)

사건번호	당초금액	수정금액	차액	관련부서
2018나2074267	205,486,285	265,626,572	60,140,287	자원순환과
2017다266344	63,808,994	85,977,408	22,168,414	“
2017다266351	14,375,806	19,369,921	4,994,115	“
2018나2024774	650,000,000	0	△650,000,000	건축과

2018나66366	62,144,657	13,069,647	△49,075,010	자원순환과
2015누58104	241,432,173	0	△241,432,173	세무1과
2018나2071275	50,000,000	40,625,000	△9,375,000	보건지소
합 계	1,287,247,915	424,668,548	862,579,367	

1심판결 이후 은평구가 부담해야 할 우발부채에 대한 금액을 확인하기 위하여 1심 이후의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하여 향후에 구청에서 부담할 정확한 우발부채 금액을 산정해야 하나 판결문에 대한 확인작업을 소홀히 함.

【개선 및 권고사항】

소송 또는 배상청구 등 우발부채 산출시에 1심 판결문 및 상급법원의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하여 구청이 최종부담할 우발부채의 내용 및 금액을 세목별로 검토하도록 조치할 것을 권고함.

5. 성과보고서 분야

(1) 성과보고서 지표선정 등 작성 미흡

1) 성과지표의 타당성 등 현실성 반영

【현황 및 문제점】

부서명	정책사업목표	성과지표	측정산식(방법)	달성성과
생활체육과	생활체육을 통한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선용을 통한 사회통합의 기반 구축	각종 대회 지원횟수 (대회수)	각종대회 지원횟수	목 표 100 실 적 94 달성률 94%
시민교육과	평생교육 활성화 및 평생학습 문화조성	시민교육 운영 및 지원(프로그램 수)	시민교육 프로그램 운영횟수	목 표 420 실 적 420 달성률 100%

2017회계연도 성과지표로서 타당성이 부족한 사례로 지적되어 정책사업목표에 부합되는 성과지표와 측정산식으로 수정하였으나, 정책사업목표의 성과를 나타내기에는 한계가 있음.

【개선 및 권고사항】

성과지표를 단일지수로 평가하는 것을 지양하고 예산집행 결과의 효과를 증진하는 방향으로 변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체육과는 정책사업 목표의 달성도를 측정하기 위해 지원횟수 뿐만 아니라 참가 인원수에 대한 가중평균으로 성과지표와 측정산식을 개선해야 할 것이며, 시민교육 운영 및 지원의 성과지표 또한 프로그램 운영횟수 뿐만 아니라, 교육 참여 이수율 등 참여자 수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한 프로그램 참여자 만족도 평가지수를 추가하는 등 현실성을 반영한 성과지표로서 타당성 개선이 필요합니다.

2) 성과지표의 추상적이고 구체성 결여

【현황 및 문제점】

부서명	정책사업 목표	성과지표	측정산식 (방법)	달성성과
자치 안전과	효율적인 행정서비스 제공과 구민참여 활성화	깨끗하고 쾌적한 동 청사관리(%)	예산집행율	목 표 100 실 적 88.57 달성율 89%
		통합민원 창구운영(%)	예산집행율	목 표 100 실 적 98.6 달성율 99%

2017년 지적된 성과지표의 객관성에 대한 보완없이 계속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현재의 성과지표로는 효율적인 행정서비스 제공과 구민참여 활성화라는 정책사업목표의 성과를 측정하기에 한계가 있음.

【개선 및 권고사항】

효율적인 행정서비스 제공과 구민참여 활성화라는 정책사업 목표의 성과를 객관적으로 측정하기 위해서 구민의 만족도를 반영할 수 있는 성과지표와 그에 부합하는 측정산식을 설정하시기 바랍니다.

3) 성과지표 측정산식 관련 일관성 부족

【현황 및 문제점】

부서명	정책사업목표	성과지표	측정산식 (방법)	달성성과
감사담당관	엄정한 감사실시와 공정하고 투명한 민원관리로 청렴한 공직 풍토조성	청렴사업 추진율(%)	계획대비 추진율	목표 100 실적 100 달성율 100%
		응답소 현장민원 처리율(%)	현장민원 처리율	목표 100 실적 100 달성율 100%

감사담당관의 경우 2018년 권익위 청렴도 평가가 2등급에서 3등급으로 하락 하였으나, 청렴사업 추진율이라는 성과지표에 대한 달성성과는 2017년과 동일하게 100%라는 달성율을 나타내고 있음. 이는 정책사업 목표의 성과를 측정하는 측정산식이 객관화 되어있지 않아 달성성과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짐을 보여줌.

【개선 및 권고사항】

손쉽게 100% 달성으로 표기되는 주관적인 측정산식 설정을 지양하고, 측정 가능하고 정확한 성과지표와 측정산식 설정을 위해 적극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목표대비 달성률에 대한 원인분석 미흡

【현황 및 문제점】

부서명	정책사업목표	성과지표	‘17년 달성성과	‘18년 달성성과
협치담당관	주민참여 활성화 및 평생학습체제 구축	자원봉사활동 운영실적 (봉사활동인원)	목표 20,100 실적 25,100 달성 124%	목표 20,200 실적 20,200 달성 100%
주거재생과	지속가능한 공동체 회복 및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개선으로 살기 좋은 주택환경 조성	위법건축물 이행강제금부과 (건)	목표 400 실적 1,272 달성 318%	목표 500 실적 2,128 달성 425%

보건위생과	식품위생업소, 공중 위생업소 등 위생 및 식품안전 수준향상	식품 및 공중위생 업소지도점검(%)	목표 5 실적 32 달성 640%	목표 6 실적 11.7 달성 195%
일자리경제과	유통질서 확립을 통한 안전한 농축산물 관리	축산물 유통 질서확립(천원)	목표 4,000 실적 4,330 달성 108%	목표 4,000 실적 10,710 달성 267%
도시경관과	아름다운 도시경관 조성	불법광고물 정비 (건)	목표 1,000,000 실적 3,119,068 달성 312%	목표 1,200,000 실적 2,390,000 달성 199%
환 경 과	지역에너지의 적정관리	에너지절약 및 에코마일리지 사업추진(명)	목표 3,890 실적 10,360 달성 266%	목표 3,890 실적 5,336 달성 137%

성과보고서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충실한 성과분석을 통해 목표치를 설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저히 낮은 목표치를 설정하여 목표대비 달성률이 과도하게 높거나, 전년도 달성률과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 것은 성과에 대한 구체적 분석 없이 목표치를 설정하였음을 보여줌.

【개선 및 권고사항】

성과미달성 및 초과달성(130% 이상)의 경우에는 이에 대한 원인분석을 철저히 하여 제시하여야 하며, 최근 3개년의 성과 달성율을 분석하여 목표 설정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과 함께 현실적인 목표치를 설정하시기 바랍니다.

Ⅲ. 총 평

2018년 은평구 감사위원으로서 소임을 마치며 느꼈던 몇가지 점들을 분야별로 간략히 요약해 보겠습니다.

【 세입 분야 】

세입결산 분야에 대해 검토한 결과 걱정하게 업무가 처리되고 있었습니다. 다만, 결산시 담당자들이 수치를 누락하거나, 징수결정액 등에 대한 개념을 잘못 이해하고 있어 세입결산 금액에 일부 오류가 보였습니다.

2019회계연도 결산서 작성 시에는 세입결산 총괄부서에서 작성방법 등에 대한 사전교육을 시행하여 정확한 수치가 결산서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차량과 관련된 미수납액이 매우 많습니다. 과태료가 소액이어서 압류 이후 체납처분의 어려움이 있으며, 압류의 실효성이 없는 경우가 많아 징수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누적된 체납액은 업무에 부담을 주어 업무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있으며, 징수 가능성이 낮은 체납금액이 누적되면서 현실적인 수치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징수 가능성이 낮은 체납 건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나 조례의 검토, 개정 등을 통해 결손처분 하는 것이 징수 업무의 효율성을 높여 불필요한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세출 분야 】

결산기간동안 은평구에 대해 느꼈던 점을 말해보겠습니다.

첫째, 구청장 및 구의회 의장을 비롯한 여러부서 주무관과의 대화를 통해 느낄 수 있었던 점은 과거 공무원의 권위적인 태도는 깨끗이 사라지고 구민을 존중하고 그들을 위해 노력 봉사하려는 자세가 충분히 함양되어 있다는 점에 놀람과 기쁨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직원들은 항상 낮은 자세로 구민의 입장에서 구민들을 대하며 구민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열린 마음을 갖고 있고 그들의 얘기를 충분히 경청하며 반영하려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점이 무엇보다 돋보였습니다.

이러한 점은 향후 은평구의 발전에 가장 큰 발전적 요소로 작용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둘째, 다만 우려되는 점이 있다면 과거의 선례 및 관습대로 무사안일의 태도를
견지하고 타성에 젖어 업무의 개선 및 혁신과 도전의식이 결여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자칫 일상적이고 반복적인 업무를 진행함에 고정관념과 매너리즘
에 사로잡혀 보다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면을 도외시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조직의 활성화를 위해 과감한 인센티브와 포상제도 등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혁신적인 제도는 장기적인 은평구의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셋째, 예산편성에 있어 시급한 단기성 예산과 아울러 장기적인 안목을
바탕으로 예산을 균형있게 편성할 필요가 있다고 느껴집니다. 재정자립도가
높지 않은 상황을 감안해 볼 때, 어려운 점이 있으리라 생각되지만 구의
미래를 고려하여 다시 한 번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연단위 뿐만 아니라 중장기 예산편성, 목표설정, 시계열
(時系列)에 기초를 둔 이정표의 작성도 필요해 보입니다. 아울러 이러한
내용은 전 구청 직원과 공유가 되어야 한다고 보여집니다.

【 성과보고서 분야 】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2016회계연도부터 시작한 성과보고서는 자치단체가
부서별로 성과목표·지표를 사전에 설정하고 목표치 달성여부 등의 성과
정보를 재정운용에 활용하는 제도입니다.

전년도 대비 개선은 되었다고 하지만, 전반적으로 성과지표 설정시 내실 있는
지표 관리로 전략목표에 대한 실적을 적절히 평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
연도 성과계획서 및 보고서 작성 시 그동안 지적된 사항이 개선,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검사 기간 동안 협조하여 주신 은평구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IV. 전년도 지적(권고)사항 조치내용

IV. 전년도 지적(권고)사항 조치내용

전년도 지적(권고)사항에 대한 분야별, 부서별 조치내용 검사결과 착오부과 및 공사비 과다지급 등으로 인한 환급 발생, 이월예산 최소화 노력, 예비비 편성기준 준수 등 부서별로 지적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조치되었음.

분야	지적(권고)사항	처리결과	해당부서
세입	관련법 착오적용에 따른 부과취소	○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행위에 대한 2018년분 이행강제금 부과계획 수립시 2017년에 위법시설 철거 후 건축허가를 득한 사항(1건)을 사전에 확인하여 장기위법시설 목록에서 제외하고 2018년분 이행강제금 미부과 조치함.	공 원 녹지과
	공사비 과다지급으로 인한 환급 발생	○ 계약 시 또는 사전 설계 시에 치밀한 사업계획으로 주의를 기울여 공사비 등의 사업예산이 과다하게 산출되지 않도록 함. ○ 일반회계 미수납액 100,837천원 중 34,637천원 납부완료 하였으며, 잔여 66,200천원은 분납 계획에 따라 분기별 납부 중임.	치수과
	행정착오로 인한 환급 발생	○ 과태료 부과 전 주소지 등 개인정보 철거 조회 후 처분을 실시하여 행정착오 최소화. ○ 청소차량 폐차에 따른 보험 환급금으로 세외수입사항이 아닌 구예산 반납사항으로 환급조치 후 반납처리하였음.	자 원 순환과
	행정착오로 인한 환급 발생	○ 재산세 부과 전 건축과, 주거재생과 등 타부서와의 업무협조 및 건축물 대장 등 공부를 철저히 검토하여 재산세 자료정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특히 재개발 진행중인 건축물에 대해서는 과세기준일을 기준으로 현장출장을 통하여 건물의 멸실여부를 면밀히 조사 및 검토하여 재산세 부과에 착오가 없도록 철저히 검토하겠음.	세무1과

분야	지적(권고)사항	처리결과	해당부서
세입	<p>미수납액 증가에 따른 결손처리현황 (1) 주차장특별회계 미수납액증가 (임시적세외수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추진계획 수립·운영 ○ 기초과세 자료의 정확한 관리로 납기 내 징수율 제고 ○ 감경, 가산금 제도 등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지속 홍보로 자진 납부 유도 ○ 자동차 압류 및 차령초과 말소 등에 대한 차량 대체 압류 ○ 고액채납자 소유 부동산 및 예금 압류로 강력한 채납징수 ○ 자동차등록번호판 적극 영치 (세무2과 자동차번호판영치팀과 연계) 	주차관리과
	<p>(2) 지하수이용부담액 채납액 중 회수불능 분 결손처분 권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하수 이용부담금 채납액 중에서 소멸 시효가 지났거나, 압류 등의 채권확보 조치도 되어있지 않고, 무재산 등의 이유로 사실상 회수가 불가능한 14건의 채납액 1,092,530원에 대하여 시효결손 처분 완료. ○ 향후 지속적인 재산조회 및 채권확보로 채납징수에 적극적인 노력을 하도록 하겠음. 	치수과
	<p>(3) 지출금반환비 미수납액 징수를 위한 적극적인 방안 강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장비용 징수 관련 제도개선 건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수급자의 일용근로소득은 보건복지부에서 국세청으로부터 확인하여 사회보장정보 시스템을 통해 지자체에 연 2회(확인조사 시) 제공하고 있으나, - 국세청에 신고된 일용근로소득을 월별 또는 분기별로 제공하여 소득조사의 즉시성을 높이고, 보장비용 징수 발생을 감소시켜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을 서울시에 건의 완료하였음. <p>[생활복지과-22316(2018.8.6.)]</p>	생활복지과

분야	지적(권고)사항	처리결과	해당부서
세출	이월예산 최소화의 노력	○ 10월 특교세 교부로 당해연도 집행이 어려워 사고이월 되었으나, 예산 확보 전 선제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예산교부 시 바로 집행될 수 있도록 현장조사 및 설계 철저히 하도록 함.	공 원 녹지과
		○ 예산 확보 전 선제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예산교부 시 바로 집행될 수 있도록 현장 조사 및 설계 철저히 함.	치수과
		○ 정확한 분석 및 면밀한 계획을 수립하여 이월예산이 없도록 하겠음.	가 족 정책과
		○ 갈현동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예산은 공정진행에 따라 연도내 집행이 어려워 예산을 이월한 바 있으나, 면밀한 예산편성 및 추진 가능한 일정 계획 수립을 통해 이월예산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음.	시 민 교육과
		○ 사전 수요조사 및 정확한 분석으로 사전 계획수립을 통해 사업예산이 당해에 집행 될 수 있도록 하겠음.	일자리 경제과
		○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 수립과정 및 서울시 협의, 자문, 심의 진행시 용역 장기화로 부득이 예산이월이 불가피하게 되나,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단축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하여 노력해 나가겠음.	도 시 계획과
		○ 문화재 보수, 도서관 및 문화기반시설 조성사업 추진일정 상, 준공시기 미도래 등의 사유로 이월이 불가피한 사업이 일부 있었음. ○ 추후에는 보다 추진 가능한 일정 계획 수립을 통해 이월예산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음.	문 화 관광과

분 야	지적(권고)사항	처리결과	해당부서
세출	이월예산 최소화의 노력	<p>○ 「구립 진관어린이집 신축」 사업은 도시 계획변경 인가 고시(2018. 12. 13) 이후 매입 계약 체결 및 부지매입비 지급(2018. 12. 31)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여 이월예산 집행률을 제고하였으며, 현재 신축공사 정상 추진 중임.</p> <p>○ 「구립 어린이집 확충」 사업은 市 국공립 확충 심의 신규 승인에 따른 예산 확보 후 감정평가, 공유재산 및 관리계획 심의, 투자심사, 계약심사 등 사전이행절차에 6개월 이상 소요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절차 완료 후 1개월 이내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금, 중도금 지급, 설계용역 추진 등 이후 절차를 조속하게 진행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후 절차 또한 신속하게 추진하여 이월 예산을 최대한 집행 하겠음. 	보 육 지원과
		<p>○ 특별교부금 및 특별교부세 등이 하반기에 집중 편성되어 부득이 예산을 이월하여 집행 하였음. 향후 사업 예산사용에 있어 면밀한 분석 및 계획 수립을 통하여 이월 예산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p> <p>○ 노인복지관 운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7. 6. 예산확보 후 설계, 공사 발주 등 정상추진 되어 진행하였으며 예산 이월하여 사업 진행. <p>○ 소규모노인복지센터 건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7. 12. 공사완료 후 시설비 낙찰차액, 자산취득비 이월하여 복지관 운영 일정에 맞춰 정상 사업 집행. 	어르신 복지과

분야	지적(권고)사항	처리결과	해당부서
<p style="text-align: center;">세출</p>	<p style="text-align: center;">이월예산 최소화의 노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심마을 경로당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7. 9. 사업비 확보 후 사업 정상진행 중임. 부지매입, 잔금지급 등이 18년으로 넘어가면서 예산이월 하여 사업 집행. ○ 구립경로당 확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7. 9. 사업비가 확보되면서 사업진행 하였으나 경로당 부지 물색에 어려움이 있어 예산 이월 하여 사업 진행 중임 (부지확보 즉시 사업진행 예정) ○ 녹번경로당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7. 6. 사업비 확보 후 사업진행 하고 있으며 부지매입에 기간이 소요되어 예산 이월하여 사업 집행 중. (부지매입계약 완료 상태이며 현재 잔금 지급 절차만 남음) ○ 구립노인복지관 시설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7. 4. 사업비 확보 후 설계, 공사 절차에 따라 사업 진행하였으나 공사일정이 18년도 넘어가면서 예산 이월하여 집행. ○ 갈현노인복지관 증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비의 추가 확보가 필요하여 현재 확보된 예산 이월 후 추가 예산확보 진행 중. ○ 역촌동 구립경로당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7. 10. 사업비 확보 후 사업 진행하였으며 부지매입에 기간이 소요되어 예산 이월하여 사업 집행(부지매입계약 완료 상태이며 현재 잔금 지급 절차만 남음) ○ 구립경로당 친환경 시설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7. 12월 설계용역 발주하였으며 예산 이월하여 사업진행 중(18. 10 준공예정) ○ 대조동 구립경로당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7. 12. 예산확보 하였으나 17년 내 사업이 불가능하여 전액 이월 조치. 	<p style="text-align: center;">어르신 복지과</p>

분야	지적(권고)사항	처리결과	해당부서
성 과 보고서	1. 성과지표 관련 (1) 성과지표로서 타당성이 부족한 사례	<p>○ 성과지표로 ‘예산집행률’은 “효율적 예산집행 등을 위한 건전한 재정 운영”이라는 정책사업목표 달성여부를 평가하는 성과지표로 타당함.</p> <p>- 우리과에서 정한 성과지표인 ‘예산집행률’은 특정 사업에 대한 예산집행률이 아니고 우리구 전체 사업에 대한 예산집행률을 의미하는 것으로, 집행률이 높을수록 해당 회계연도 사업 예산이 적절한 수준으로 편성되어 예산편성의 효율성이 높고, 건전한 재정 운영에 기여했다고 판단할 수 있음.</p> <p>- 다만, ‘예산집행률’이라는 지표명이 사업 예산 집행률로 오해할 소지가 있어 ‘예산 편성의 효율성 측정을 위한 재정집행률’로 변경할 필요성이 있음.</p>	기 획 예산과
		<p>○ 정책사업 목표달성을 위한 정확한 성과 지표 설정하겠음.</p> <p>- 예산집행률 → 각종 대회 지원횟수, 스포츠강좌 이용권 수혜자 수</p>	생 활 체육과
		<p>○ 2017년 성과지표(변경전)</p> <p>1. 세출예산 집행률</p> <p>2. 기초연금 수급증가자 수</p> <p>○ 2018년 성과지표(변경후)</p> <p>1. 어르신일자리 창출</p> <p>2. 기초연금 수급자 수</p> <p>3. 노인복지관 운영 실적</p> <p>- 2017년 2월에 2016년 성과평가 분석시 성과지표인 「세출예산 집행률」은 지표로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p> <p>- 2017년 10월에 2018년 성과계획 제출시 구체적이고 계량측정이 가능한 상기 성과 지표로 이미 변경함.</p>	어르신 복지과

분야	지적(권고)사항	처리결과	해당부서
성 과 보고서	(2) 성과지표가 추상적이고 구체성이 없어 성과를 측정하기 어려운 사례	○ 세출예산 세부사업명 ‘깨끗하고 쾌적한 동 청사관리, 통합민원창구 운영,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 등 업무의 명확성을 나타내는 성과지표로 사료되며, 사업성과를 명확하게 나타낼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음.	자 치 안전과
	2.성과지표 측정산식(방법)관련 (1) 측정산식이 계량화 되어있지 않은 사례	○ 정책사업 목표달성을 위한 구체적이고 계량적인 성과지표로 추후 설정하여 반영하겠음. - 성과지표 구체화 : 연간 수립하는 당해연도 감사계획에 따른 감사 실적 등으로 성과 관리하겠음.	감 사 담당관
	(1) 측정산식이 계량화 되어있지 않은 사례	○ 정책사업 목표달성을 위한 측정산식에 대해 추후 정량화된 성과지표로 설정하여 반영하겠음. - 성과지표 구체화 : 미니태양광 보급 지원건수 대비 설치지원 건수로 반영하여 구체화하겠음.	환경과
		○ 매년 시에서 내려오는 공공 폐기물처리 시설 반입량 관리제 운영계획을 바탕으로 전년도를 기준으로 삼아 측정산식을 계량화 하겠음.	자 원 순환과
	(2) 성과지표와 측정산식이 일치하지 않은 사례	○ 정책사업목표의 성과지표 측정산식이 일치될 수 있도록 향후 측정산식 설정 시 점점 및 횡수가 아닌 점점 및 관리면적으로 개선하겠으며, 목표달성에 대한 평가를 충분히 반영하여 적절한 목표치를 설정하도록 하겠음.	공 원 녹지과

분야	지적(권고)사항	처리결과	해당부서
성 과 보고서	(3) 목표 설정 미흡	○ 동 예산 교부 및 구민관련 행정경비 지원 예산이 많아 예산기준의 목표설정을 하였으나 다음 연도에는 보다 개별적인 목표설정을 될 수 있도록 보완하겠음.	자 치 안전과
		○ 전년도 실적과 향후 계획을 분석하여 적절한 목표치 설정을 위해 노력하겠음.	협 치 담당관
		○ 향후 성과목표 설정시 전년도 목표를 초과 달성한 원인을 분석하여 적절한 성과 목표 설정 예정. ○ 공동주택 커뮤니티 활성화 공모사업은 연도별 예산 및 공모사업 신청 규모 등을 고려하여 성과목표 상향 설정. ○ 위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가 2017년 늘어난 원인을 분석하여 향후 적정 목표 설정.	주 거 재생과
		○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지도점검 및 원산지 표시제 정착과 식품의 유통거래 질서 확립은 성과가 전년도 단속실적 대비 당해연도 단속 실적으로 산출됨. ○ 단속실적의 경우 당해연도 발생하는 이슈 (공중위생업소 화재, 식중독, 퇴폐업소 발생, 원산지 표시점검 언론보도 등)에 의해 기획 점검 등 다양한 변수가 있어 목표치 설정에 어려움이 있음. ○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상황을 대비한 테마별 위생점검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2018년 성과결과를 반영하여 2019년도 목표 수준을 합리적으로 설정하겠음.	보 건 위생과

분야	지적(권고)사항	처리결과	해당부서
성 과 보고서	(4) 전년대비 달성율에 대한 분석 필요	○ 성과측정을 위한 목표 설정 시 제반 여건 및 규정을 정확하게 분석, 타당한 목표를 설정하고 이에 따른 달성율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겠음.	일자리 경제과
		○ 2017년도 실적이 산계 오류로 인하여 실제 방역실적보다 적게 제출되었음. 간결하고 명확한 지표 설정과 실질적인 방역활동 목표량을 세워 효율적인 방역활동을 실시 하도록 하겠음.	보 건 의료과
	(5) 성과달성율 잘못 표기	○ 성과계획서 작성 시 측정가능하고 정확한 성과지표로 작성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데이터로 성과지표를 작성하고 데이터값이 착오 표기 되지 않도록 꼼꼼히 검토하겠음	도로과